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

2026. 9.

고용노동부

순 서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추진 방향 및 과제 ····· 2

1. [준비] – 지방 노동감독 기반 마련 ····· 3

〔1〕 법 · 규정 · 예산 등 기반 마련 ····· 3

〔2〕 지방노동감독관 배치 및 전문성 확보 ····· 5

〔3〕 업무 기반 시스템 마련 ····· 8

2. [협력] – 중앙 · 지방 함께 일하는 체계 구축 ·· 10

〔1〕 중앙-지방 협의체 운영 ····· 10

〔2〕 중앙-지방 협력 사업 ····· 11

〔3〕 지방 노동감독 전문성 향상 지원 ····· 13

3. [실행] – 지방 노동감독 실시 ····· 14

Ⅲ. 하반기 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····· 19

[붙임]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일정 ····· 20

Ⅰ. 추진 배경

1 **[추진배경] 임금체불·산업재해 해결**의 핵심은 **예방 감독 확대** → **중앙·지방정부가 함께** 지역 내 사각지대 없는 **촘촘한 감독 실시**

* ▲(국정과제) 93-4. (노동감독의) 효과적인 중앙-지방 협력 모델 구축
▲(대통령 지시사항) 의욕있는 지방정부부터 지방위임 단계적 시행('25.12.11)

○ 현재 노동부의 단독 감독행정(5.4만 개소, 全 사업장의 2.6%)만으로는 **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**에 **구조적**으로 **한계**

○ 지방위임 통해 **중앙정부**는 **감독행정 설계** 및 중요사안 대응강화 + **지방정부**는 생활밀착형 영세·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**예방 감독 집중**

2 **[위임방안]** 중앙정부 지휘·감독 下 **일관성·통일성 있는 지방감독 실시**

○ 지방정부는 ①**사전협의(협의체)** 된 **30인 미만 사업장** 대상 ②**노동법·산안법** 전반에 대한 ③**사업장 감독 및 사후조치**(수사·과태료 부과) 실시

* 위임 제외: ▲ 진정·고소 등 신고 사건, ▲ 노동관계법 관련 각종 인·허가
▲파견법, 집단적 노사관계법(노조법, 공무원·교원노조법 등), 중대재해처벌법

○ 지방의 접근성·정보력이 높은 **인·허가 업종, 소규모 건설현장**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고, **노동·안전 컨설팅 및 지원사업과 연계**

3 **[추진경과]** 지방감독 준비를 위한 **근거 법률 마련, 예산 편성,** 협의회·간담회·워크샵 등 **사전협의, 합동점검·업무협약** 등 **실시**

○ **(인프라)** 지방위임 근거 법률인 **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** 제정('26.12.8 시행), 지방감독 **경비·교육비 편성**('26년 32억원)

○ **(소통·협업)** 공감대 형성을 위한 **간담회·현장방문**(총 45회)·**워크숍**('25.12, '26.7.), 중앙-지방 **합동점검**('25.10~12월, 3,359개소) 등 실시

- **업무협약**(제주 1.30/경기 7.22) 체결, **「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계획」 시달**(4.20.) 및 **9개 권역별 지역감독협의회 개최 완료**(5월)

Ⅱ. 추진 방향 및 과제

목표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

1 준비
지방 노동감독 기반 마련

① 법·규정·예산
-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하위법령, 집무규정 등 마련
- 감독 사무경비 예산 지원

② 전문성 확보
- 인력 확보, 적합 직렬 배치 등 인사관리
- 지방감독관 맞춤형 교육
- 자격·임면 법정화 및 독립성 보장

③ 시스템·평가
- 노동정보시스템 구축
- 위임사무 평가 신설 및 인센티브 연계

2 협력
중앙·지방이 함께 일하는 체계 구축

① 협의체 운영
- 「전국노동감독협의회」 운영
- 9개 권역별 「지역노동감독 협의회」 운영

② 중앙-지방 협력 확대
- 「지역 기초노동질서 합동점검」 추진
- 중앙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인센티브 확대

③ 중앙감독관 지원
- 중앙감독관 파견
- 지방노동청 현장 멘토링

3 실행
지방 노동감독 실시

① 계획 수립
- 시·도별 자체시행계획 수립
- 지방감독 수행능력 점검

② 위임 대상 선정
- 지역협의회, 후보사업장 선정
- 전국협의회, 최종 확정

③ 사업장 감독
- 권리구제 직결, 위반多 항목 중심 점검
- 감독 표준화·시스템화

④ 수사
- 파견감독관-노동청-공소청(검사) (3단계 지원 체계)
- 신속 질의회신체계

⑤ 위임사무 관리 (사전·집행·사후 단계별 조치)

사 전	집 행	사 후
• 자체시행계획 보완·변경 요구 • 위임사무 수행능력 점검	• 시정 및 개선요구 (지도·감독)	• 시정명령 및 취소·정지 • 감사 • 위임권한 철회 • 직무이행명령

1 준비 - 지방 노동감독 기반 마련

1 법·규정·예산 등 기반 마련

1 하위법령 및 지침·규정 마련

□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

○ **ILO 협약*에 부합**하는 **효과적인 지방감독 체계를 구축**하기 위해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여 **시행령·시행규칙안** 마련

* **제81호 근로감독 협약**: 제4조(중앙 당국의 감독 및 통제), 제6조(신분보장 및 독립성), 제7조(채용 및 훈련), 제12조(감독관의 권한) 등

- 전문가 논의(3월) 및 지방정부 의견수렴(6월) 거쳐 입법예고(7.24.~9.2.)

<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>

〈시행령〉

○ **(지방감독관 자격·임면 등)** ▲시도지사는 소속 4급~7급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 이수자 임명(8급·9급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방공소청장 지명), ▲임면 협의 절차, ▲적합 직렬·직류 우선배치·장기근무 지원, ▲불리한 처우등에 노동부장관 조치 절차

○ **(감독권한 위임·철회)** ▲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및 후속조치(사법처리·과태료 부과) 권한 위임, ▲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등 불이행 시 위임 철회 可

○ **(위임사무 지원·통제)** ▲위임사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지침·기준 및 해석·의견 제시, ▲위법·부당한 업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지도·감독, 시정명령 등 조치 기준·절차

〈시행규칙〉

○ **(협의체 운영)** 전국 및 지역 노동감독협의회 구성·운영 방법, 협의 결과의 이행 등

□ 지방감독 준비·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

○ **(조직·인력 구성)** 지방정부의 통일적인 **감독 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감독관 배치**를 위한 **「조직·인력 구성 가이드라인」** 배포('26.3월)

○ **(집무규정)** 지방감독 **세부절차·기준** 규율 **집무규정**(훈령) 제정(~10월)

* 총칙(직무, 교육), 사업장 감독(감독계획, 실행·조치기준), 수사, 중앙-지방 협력

2 지방감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

□ 감독권한 지방위임 예산 지원 원칙 수립

① **중앙-지방, 지역 간** 활동비·피복비 등 **감독관 처우 유사**하도록 조율

* [소방관 사례] 지방정부 재정여력에 따라 인력·시설 등 소방·구조 역량 및 처우 상이 →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서비스 제공 위해 국가직 전환('20년)

② 지방정부가 감독 수행 시 **직접 수반되는 경비 중심** 지원

- ▲**(자치단체)** 자산취득비 등 감독기반 예산 편성
  ▲**(노동부)** 감독관 활동비, 여비, 차량 임차, 공공요금 등 편성

③ 통일적인 인프라(교육·전산 등) 예산은 **노동부가 일괄 편성·확보**

□ 지방감독 준비·착수에 필요한 예산 차질없이 지원

○ '26년 지방감독관 **업무 수행에 필요**한 **사무경비**(9.6억, 국비 70%) 및 **교육비**(22억) **旣반영**, **'27년 정부안**도 유사하게 편성(총 96억)

- **'26년 예산**은 선도지역 등 6개 자치단체에 **약 4억원 교부**(8월) 향후 추가 소요 있을 경우 **예산 범위 내**에서 **수시배정 예정**

* (일정) 매칭비 확보·교부신청(지방정부, ~8월) → 교부(8월)→ 집행·정산(~12월)

□ 지방정부 주도 노동조건 개선 지원

○ 지방 특성에 맞는 **산재예방 사업을 기획·운영**할 수 있도록 **'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'** 통해 재정 지원 中(총 143억원)

○ 지방감독과 연계하여 **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정책** 확대 시, **'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*' 선정 우대**('27~)

- ▲지방정부 **자체사업*(사전 예방)** 활용, ▲찾아가는 **컨설팅·교육**, ▲지역 단위 **캠페인** 등도 병행하여 **지역 주도로 노동조건 개선**

* <기존사례> ▲(서울) 노동권리보호관, 노동권익센터, 중소사업주 컨설팅 등, ▲(경기) 노동안전지킴이, 스마트 마을노무사, ▲(인천) 무료 노동법률상담소

2 지방노동감독관 배치 및 전문성 확보

❖ **ILO 협약(제81호)**은 중앙정부 감독(제8조) 하에 감독관의 직무수행 **자격과 충분한 훈련**(제7조), **신분 보장·독립성**(제6조) 요구

→ **전문성·독립성 확보 위한 임면·인사관리 법적근거 마련 및 지원**

1 감독 조직·인력 확보 및 인사관리 지원

□ 조직·정원 마련 지원

○ 각 지역이 **감독 조직을 신설**하고, **적합한 인력을 채용·전보**하여 배치토록 독려(조례안 마련 → 지방의회 의결 → 실시)

- 행안부, '26년 감독착수 인력에 대한 **기준인건비(120명) 수시배정**('26.7.7.) 및 **추가 인력은 '27년 기준인건비**에 반영 예정('26.5.29.)

  *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(정원) 초과하여 감독관 채용 가능하도록 제한 완화

□ 적합 직류·직렬 중심 채용·배치 지원

○ **(공채) 노동기준** 분야는 '**행정직렬**(노동 직류)', **산업안전** 분야는 '**기술직렬**(기계·전기·화공·건축·토목·보건직류 등)' 포함 채용 요청

- 인사처 '27년 **정기채용 일정***에 맞춰 **지방정부 채용계획 수립 요청**(~12월) → 인사처에 **노동직류 시험출제 수탁**(노동법·경제학 등)

  * [7급] '27.6월 채용 공고/10월 필기, [9급] '27.2월 채용 공고/6월 필기

○ **(경채)** 제도 初 신속 인력배치 위해 **민간 전문가***(노무사 등) 채용 병행

○ **(전보)** **특사경 경력자, 기술직** 등 중심으로 **6·7급 우선 전보 유도**

〈 **조직·인력 구성 가이드(안) 주요내용** 〉

■ **(조직)** 기업·일자리 부서와 분리, 연도별 증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 구성(팀→과→국), 노동·산안 課 구성·명칭, 업무분장·좌석배치 등

■ **(인력)** 전보자/신규자 및 6·7급/8·9급 비율, 인허가 업무 담당자 및 특사경 경력자 전보, 노동직류·기술직렬 중심 배치, 경채(임기제) 등

2 지방노동감독관 전문성 확보

□ 지방감독관을 위한 맞춤형 감독·수사 교육과정 개발

○ **(개발)** 신규 지방감독관이 교육 이수 후 단독 업무수행 가능하도록, **감독 사무를 표준화**한 **매뉴얼 개발** 및 **실습 중심 교육과정 신설**

- 주요 법령의 **핵심사항** 중심으로 **체크리스트形 감독매뉴얼*** **개발**, 법 위반 판단기준 및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안내

- 핵심 유형·업종별 **표준 감독과정을 체험**토록 **모의사건 실습**(8주)

* (실습) 감독 全과정 순서도化·반복 체화+기계·설비 등 위험요인 발굴·개선

○ **(운영)** **전담조직 신설·인력 배치한 시·도** 교육 실시(10~11월), 준비인력 대상 **단기 기본교육** 제공(8월~) 등 업무공백 없도록 지원

○ **(보완)** 중앙감독관 파견자 중심 **학습조직 운영 정례화**(교안 제공), **노동부의 수사 전문교육 과정***('26년 24개·4,140명) 참여 기회 부여

* 형법·형사소송법, 강제수사 및 과학기술 수사역량과정 등 수사실무 과정

□ 장기근속 유도

○ **(인사관리)** **잦은 순환보직**, 직무 무관 직렬·직류 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**인사관리 규정*** 명시(노동감독관법 시행령)

* ▲적합 직렬·직류 배치 ▲ 필수보직기간 이상 장기근무 지원

○ **(인센티브)** **전문직위(군) 지정, 근속 유도 자치단체**는 평가·포상 우대

○ **(승진가점)** 감독 경력·실적 등이 **근무성적평가·승진상 가점**으로 반영되도록 자치단체별 **인사규칙 마련 요청**

[예시] 「 ○○도 공무원 인사규칙」 가산점 규정

- **경력가산점** ▲특정업무(사회복지업무) 근무경력 : 최대 0.75점 ▲전문직위 근무경력 : 최대 1.5점 ▲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경력 : 최대 0.75점 ※단, 중복 불가
- **실적가산점** ▲시책사업 등 업무추진 우수 ▲격무·기피부서(팀) 근무자 등

* 타 지방정부도 유사하게 가산점 제도 운영, 점수는 지방정부별 일부 상이

3 자격·임면 절차 법정화 및 독립성 보장

□ 자격 규정 및 임면 사전협의를 통한 부적격자 배치 방지

○ **(자격)** 시·도의 "**4급~7급 공무원**"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"**교육 이수한 자**"에 대해 **시·도지사**가 지방노동감독관 **임명**(시행령)

* ▲**(직급)** 감독 전담 조직(局 설치) 등을 고려하여 직급 상향 검토 가능
▲**(이수요건)** 부서장 등 미리 전보자 Pool 구성, 교육 참여토록 협조 필요

- 신규감독관 교육 과정 **평가 통과(이수) 시 감독관 임명 자격** 부여, '승인 보류자'는 재교육·재평가 의무화

○ **(임면)** 시·도지사는 임면시 노동부장관에 **사전협의** → 노동부 장관은 **의견 제시** 가능 → 협의 후 **임면**(노동감독관증 발급) **및 사후보고**

<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절차 >

사전 협의		재협의	사후 보고
협의 요청 (시·도지사)	**의견 송부 (노동부장관)**	**재협의 요청 (노동부장관)**	**임면결과 보고 (시·도지사)**
▸최소 14일 전 요청(감독관 교육 이수, 법상 결격 여부 확인) ⇨	▸7일 내 서면 송부(시·도지사는 의견 최대한 반영 의무) ⇨	▸시·도지사가 의견 불수용 시 1회에 한해 재협의 가능 ⇨	▸임면 후 7일 내 노동부장관에 결과 보고 (이견 없을 시 생략 可)

□ 지방감독관의 신분 보장 및 독립성 확보

○ 시·도지사·상급자는 지방감독관의 **직무에 부당하게 개입**하거나 **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 불리한 처우**를 할 수 없음(법 제29조①)

- 불리한 처우 등 발생시 지방감독관은 **노동부장관에 조치 요청** 가능

* 조치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은 30일 이내(1회 연장 가능)에 조사를 통해 불리한 처우 등의 취소·중지,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에 반해 **지방감독관 직무배제 금지**(제29조③)

3 업무 기반 시스템 마련

1 지방감독 전산 구축 및 모바일 점검표 지원

□ 지방감독 업무에 적합한 노동정보시스템 구축

* 전산시스템 제도 설계·예산 확보 및 개발기간 소요 → '27년 본격 개통

❶ 1단계('26년) : 노동부 감독전산시스템 기반 간이시스템 구축

- 연내 착수 시 안정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, 노동부 감독 시스템 중 일부를 개방하여 간이 운영(~11월 개발 → 12월 시행)

❷ 2단계('27년) : 지방정부 전용 노동정보시스템 구축

- 지방정부 위임범위를 반영한 **전용 노동정보시스템 구축** → 중앙·지방 시스템을 분리하되 **필요 정보는 연계·공유**

* 일정: 사업자 선정(~'27.2월) → 시스템개발(~'27.6월) → 시스템 오픈('27.7월)

지방노동감독관 노동정보시스템 주요 개발사항

- **(사업장 감독)** 감독계획 수립, 대상 선정, 결과 관리, 후속 조치
- **(사법절차)** 범죄인지, 수사결과보고, 강제수사, 송치, 각종 대장 관리
- **(정보공유)** ❶(중앙→지방) 사업장 정보, 과거 감독·사건·인허가 이력, 체불·산재 발생 이력, 지침·법령·판례 등 ❷(지방→중앙) 감독·수사 등 결과

□ 감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모바일 점검표 · AI 비서 서비스 제공

○ 지방감독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, 현장에서 **필요 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결과 입력**할 수 있는 **'모바일 점검표' 개발**(~'27.7월)

- 지방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**사업장 정보·감독 결과 등 송·수신**

○ **노동감독관 AI 비서 서비스***를 신규 구축하여 수사결과보고서 초안 작성, 챗봇 서비스 등 **AI를 활용한 업무처리 지원 추진**

* AI가 노동법령, 판례, 행정해석 등 학습하여 ▲단순문의부터 복잡사안까지 실시간 답변 ▲진술조서·결과보고서 등 초안 작성 ▲법위반 판단근거 제공

2 위임 사무 평가 및 인센티브 연계

□ (평가 방향) '사전점검 → 합동평가 → 별도평가' 단계적 추진

○ **('27년) 위임사무 수행능력 사전점검**(§28①) 통해 착수 여건 마련

- (방식) **감독 개시 필요 최소요건** 위주로 점검

- (항목) ▲감독 전담 조직·인력 현황, ▲감독관 교육 이수 현황, ▲예산편성, ▲사무공간 등 인프라 마련, ▲감독운영계획 수립

- (실행) 지침 마련(~9월) → 점검 실시, 미비점 보완·완료(10~11월)

○ **('28년) 합동평가 지표**에 성과 중심(감독률·시정완료율 등) 반영 추진 → '29년 이후 별도평가로 전환도 검토

< 성과평가 지표(예시) >

지표 유형	주요 항목	외부 우려 대응
투입 지표	· 전담조직 구축, 감독관 수, 교육이수율 등	**⇒ 전문성 검증**
산출 지표	· 감독률, 지도·지원 실시율, 시정완료율 등	**⇒ 지역유착 방지**
성과 지표	· 체불/재해 감소율, 동일사업장 반복위반율 등	**⇒ 정책효과 검증**

□ 포상·포상금, 감독 권한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

○ **('26년) ▲노동부장관 표창**(8점), ▲자치단체 **포상금**(총 1억원 이내)

- 중앙-지방 협력체계 구축, 기초노동질서 점검 등 지방감독 도입 준비 및 제도 안착에 적극 기여한 **개인·부서 대상 표창 및 포상**

○ **('27년)** 노동부장관 **표창 확대, 정부 포상(국무총리 이상) 신설** 추진

□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마련

○ **(자율성 확대)** 감독 목표달성 여부, 감독 역량·자체재원 투입 등 **성과 평가** 통해 단계적으로 위임 **규모·실행 자율성*에 차등**

* 예시) 시·도에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 확대

○ **(보완)** 성과 저조 자치단체에 **별도 컨설팅 등 지원**, 연례보고서 원인 분석(법 제19조) 통해 **개선방안 마련**(법 제4조③)

2 협력 – 중앙·지방이 함께 일하는 체계 구축

1 중앙-지방 협의체 운영

❖ **(목적)** 감독 권한 **위임사무의 통일적 적용**, 중앙·지방 **노동감독관의 효율적 사무 처리** 등을 위해 **중앙-지방 협의회 설치**·운영(법 제32조)

❖ **(운영)** 年 **1회(전국)·2회(지역)** 이상 개최(필요시 수시 可), 협의 결과는 **협의회 종료 10일 내 시·도지사에 통보**, 협의 결과 성실 이행 의무

1 전국노동감독협의회

□ **(구성)** **노동부장관(의장), 시·도 부단체장**, 관계 **중앙행정기관**(법무부, 행안부) 차관,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

□ **(협의사항)** ▲감독 **권한 위임대상** 선정, ▲근로기준·안전보건 **통일적 적용**, ▲지방감독관 **역량 강화**, ▲전국 단위 **중앙·지방 협업** 등

< (참고) 권한 위임 범위(시행령안 제17조) >

1. 중앙노동감독관 소관 19개 법률 중 **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위반**에 대한 **사업장 감독 및 그 조치에 따른 사법경찰관리**의 직무
2. 제1호의 사업장 감독의 조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
4. 그 밖에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관련한 업무

2 지역노동감독협의회

□ **(구성)** **지방노동청장(의장), 관내 시·도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부서장**, 관내 지방노동관서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부서장

* 2개 이상 시·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회(부산·경남, 대구·경북, 광주·전라·제주, 대전·충청·세종 권역)는 하부조직으로 지역별 소협의회 구성

○ 협의 사안에 따라 **지역 노사 대표, 주민** 등 **이해관계자가 참여**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

<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체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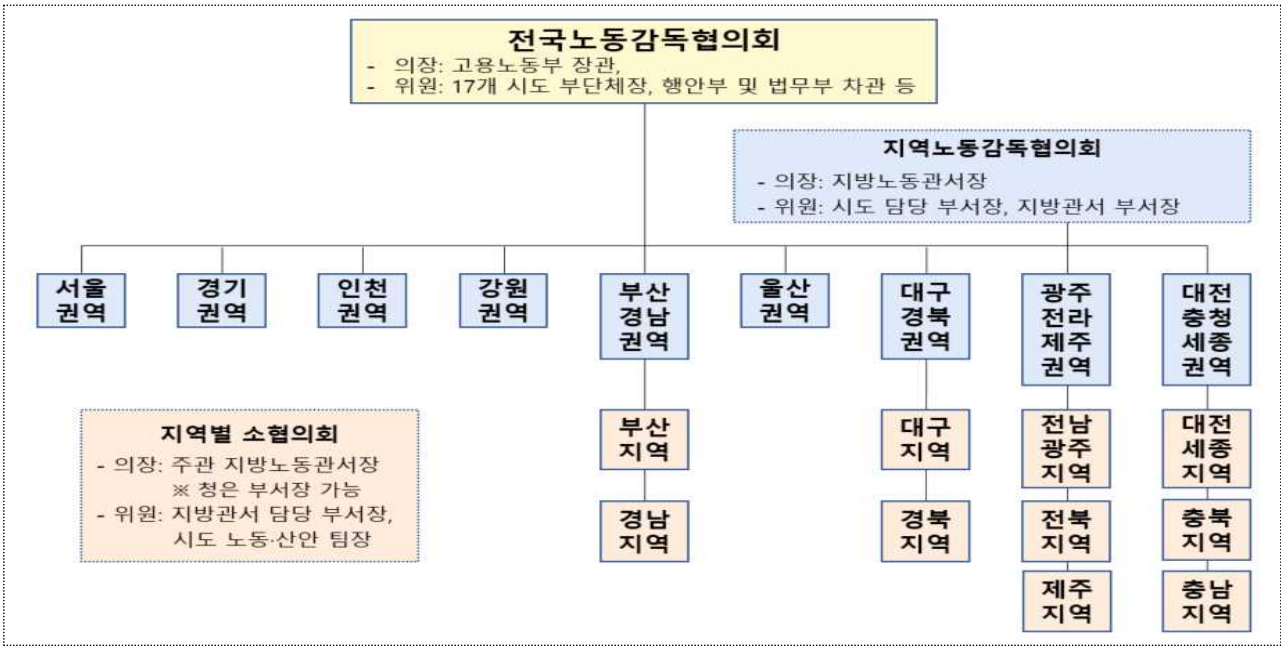

□ **(협의사항)** ▲위임 대상 검토, ▲지역내 감독 정책 수립 및 효율적 감독 방안, ▲지역 차원의 협업 및 우수 사례 공유·확산 등

2 중앙-지방 협력 사업

① 「지역 기초노동질서 합동점검」 추진

□ **(추진 배경)** 법시행에 대비 ①**지방노동관서-지방정부** 협력, ②지방정부 **감독 역량 제고**(현장경험 축적), ③지역 내 **취약 분야 발굴·개선** 필요

⇒ **「'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」**(노동 분야) 및 **「현장 집중점검 주간 동행 점검·감독 계획」**(안전보건 분야) 수립·시달(4.20.)

< 「'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」 주요 내용 >

[목표] ① 소규모 취약분야(노동·산안) 집중점검 ② 지방정부 현장실무 참여

협업체계 구축	사업장 감독	컨설팅 실시
▸**지역노동감독협의회 (9개 권역, 지방정부-지방노동관서) 개최** ⇒ 협업방안 논의, 권역별 **자체 추진계획** 수립	▸지방정부, **감독대상 선정 참여**(취약분야·업종 등) ▸**지방행정-지방노동관서 노동·산안 감독 연계** (동행 점검)	▸영세 사업장 **컨설팅 → 지방정부는 대상 선정**, 지방관서는 콘텐츠 제공

□ **(권역별 자체계획)** 9개 권역별 **'지역노동감독협의회'***를 개최하여, **지역·산업 특성**에 맞는 **'자체 추진계획' 수립 완료**(5월)

○ **(사업장 감독)** 권역별 ①지방정부 보유정보 기반, ②취약노동자 다수 고용, ③인·허가권 및 수탁기관 연계, ④체불 다수발생 업종 등 선정

○ **(컨설팅)** 지방정부 ①자체 사업, ②권한 및 정보, ③협·단체 협업, ④공무원·산하기관 노무담당자 등과 연계하여 컨설팅 추진

< '26년 권역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자체계획 주요 내용(요약) >

유형	선정 이유	해당 권역(주요 점검 대상)
① 지방정부 보유정보 기반	노동권익센터 등 지방정부가 보유한 상담·민원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	▸ **서울**: 노동권익센터 다수 상담 (병·의원, 학원, 정보통신) ▸ **광주**: 노동인권센터 다수 상담(음식점업) ▸ **충남**: 노동권익센터 다수 상담 업체 ▸ **울산**: 산업단지의 소규모 사업장 선정
②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	외국인, 농·어업 등 근로조건 보호에 취약한 노동자 타겟	▸ **강원**: 외국인 계절노동자 및 농·축·어업 ▸ **전북**: 농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▸ **충북**: 외국인 계절노동자
③ 지방정부 인·허가권, 수탁기관 활용	지방정부의 인·허가권 등 관리 권한을 보유한 분야를 우선 점검	▸ **대구·경북**: 인·허가 권한 업종·분야 ▸ **대전·인천**: 시 사업 수탁기관 및 산하기관 ▸ **세종**: 식품위생 영업신고 대상 사업장 ▸ **충북**: 사회복지·요양시설, 어린이집 등
④ 지역별 체불 다수 발생 업종	체불 데이터 등을 기초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종·분야	▸ **경기**: 제조업, 보건·사회복지업 등 ▸ **부산**: 숙박업, 음식점업, 건설업 ▸ **제주**: 관광서비스업, 외식·숙박업

□ **(중앙 사업 연계)** **기존 공모사업**(근로조건 자율개선 등)을 지방정부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**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**

(참고) 노동부 주요 공모사업

▲ **근로조건 자율개선:** 시행주체를 '지방관서 → 지방정부+수행기관(노무사회 등)' 구조로 단계적 전환, 지방감독 전 단계로 활용

* 지방정부 물량 : ('26) 3개 지방정부, 224개(사업장 선정 지원)

▲ **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지원:** 취약노동자 권익보호,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 우선 선정

3 중앙감독관 현장 지원

1 중앙노동감독관 파견

□ **(필요성)** 제도 시행 초기 지방정부 감독역량 보완 및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**각 시·도에 중앙감독관·부서장 파견**

*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(제33조): 중앙감독관 시도 파견 근거 규정

□ **(역할) 감독·수사 全과정에 실질적 "내부지휘·점검자" 역할** 정립

○ 특히, 위임 초기 지방감독관 역량이 부족한 수사 분야에서 입건 단계부터 수사방향, 절차 준수, 송치 등 모니터링 및 지원

< 파견 중앙감독관 주요 역할 >

위임 초기(2년내)		제도 정착기(2년 이후)
■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(법령·지침 적용) ■ 현장 동행 등 멘토링, 감독결과·조치 검토	⇨	■ 감독계획 및 취약분야 발굴 및 지원 ■ 실적점검·평가 등 감독 품질 모니터링
■ 수사 단계 지도·점검, 학습조직(사례연구 등) 운영 등 감독관 역량 제고, 중앙-지방 협력		

□ **(시기·규모 등) '26년 감독조직 구성**된 시·도에 **우선 파견**(1~2명 내외)

○ 감독 조직 규모 및 감독 물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, **인사교류**도 적극 추진하여 지방감독관의 노동청 근무 기회 제공

2 지방노동청 현장 멘토링

□ 지방감독관은 교육완료 및 현장 배치 후, **중앙감독관 참여** 下에 사업장 합동감독을 통한 **현장(실무) 멘토링 실시**(8주)

○ **(점검반 구성) 지방감독관**(2명) 및 **중앙감독관**(1명)으로 감독반 편성

○ **(운영) 지방감독관**이 담당 위임사업장을 **독립적으로 감독**하되, **중앙감독관이 동행**하여 조언·지원·환류

* '27년 지방관서 기관평가 지표에 합동감독(멘토링) 실적 포함(협력 활성화)

3 실행 - 지방 노동감독 실시

1 시·도별 자체시행계획 수립

○ **시·도지사**는 감독 **준비 및 향후 계획, 주요 감독 대상** 등 위임 권한 행사의 **목표와 방향성**을 제시한 **지역 내 감독 시행계획** 수립

* (주요내용) 감독관 배치·관리 계획, 예산, 감독 물량 및 중점 감독 분야 등

2 위임 대상 사업장 선정

□ **(선정 절차)** ①차년도 시도별 **감독 물량 확정** → ②권역별 **지역노동감독협의회 논의**(후보 사업장 결정) → ③**전국노동감독협의회 결정**(확정)

① **(감독 물량)** 시도별 **지방감독관 수 x 연간 감독 물량**(예: 30개소*)

* (참고) 지방노동관서 노동감독 전담자 1인당 연평균 감독수(50개소)
↳ 위임 연차별 확대(예: **1년차 30개소 → 2년차 40개소 → 3년차 50개소**)

② **(권역별 협의)** **지역감독협의회**에서 취약 또는 감독 필요 분야 협의 통해 **위임 대상 후보 사업장** 선정(감독 위임 물량 대비 **2배수 내외**)

③ **(전국협의회 확정)** 지역별 최종 **위임 대상 사업장 명단 확정**

□ **(대상 변경)** 위임 후 사정변경 등 **예외적인 경우, 대상 제외·추가 검토**

○ **(제외)** 폐업·휴업·근로자 없음 등 **감독 실익이 없는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**(이에 대비하여 감독물량<예: 예비 포함 2배수> 선정)

*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위임의 철회(법 제28조제5항)와는 구분

○ **(추가·변경)** 사회적 이슈 및 산업재해·사고로 **특정 업종·분야 긴급 점검** 등이 필요한 경우 **위임 대상 중도 추가·변경** 검토

* 예시) 복지시설 긴급 노무관리 점검, 특정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긴급 점검
→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부가, 30인 미만은 자치단체가 각 감독 수행

❖ 위임 대상 분야(취약 사업장) 선정(예시)

○ 노동부·지방정부 보유 정보 활용, 취약 업종 내 대상 사업장 선정
→ 지역별 체불 고위험 **업종·규모 구체적으로 제시(1~3순위)**

※ (노동부) 체불 이력, 신고사건 이력, 노무관리·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목록 등
(지방정부) 인·허가 사업장 DB, 지방세 납부이력, 불법 건설신고 현황 등

구분	1순위	2순위	3순위
서울	출판업 x 5~29인	의복, 의복 엑세서리 제조업 x 5~9인	사업지원 서비스업 x 10~29인
부산	가죽·가방·신발 제조업 x 10~29인	종합 건설업 x 5~9인	음식점 및 주점업 x 10~29인
대구	섬유제품 제조업 x 5~29인	소매업 x 5~9인	음식점 및 주점업 x 5~29인
인천	사업지원 서비스업 x 5~9인	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x 1~4인	전자부품, 컴퓨터 등 제조업 x 10~29인
광주	종합 건설업 x 5~9인	전자부품, 컴퓨터 등 제조업 x 10~29인	보건업 x 10~29인
대전	출판업 x 5~9인	기타 개인 서비스업 x 10~29인	연구개발업 x 10~29인
울산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x 5~29인	기타 기계·장비 제조업 x 10~29인	자동차·트레일러 제조업 x 1~29인
세종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·시계 제조업 x 10~29인	전기장비 제조업 x 10~29인	보건업 x 10~29인
경기	섬유제품 제조업 x 10~29인	가구 제조업 x 5~29인	고무·플라스틱제품 제조업 x 10~29인
강원	숙박업 x 10~29인	농업 x 1~4인	식료품 제조업 x 10~29인
충북	식료품 제조업 x 5~29인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x 10~29인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x 10~29인
충남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x 5~29인	자동차·트레일러 제조업 x 10~29인	어업 x 1~4인
전북	어업 x 1~4인	식료품 제조업 x 5~29인	의복, 의복 엑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x 5~9인
전남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x 1~29인	어업 x 1~4인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x 10~29인
경북	자동차·트레일러 제조업 x 10~29인	섬유제품 제조업 x 5~9인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x 5~9인
경남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x 1~29인	금속가공제품 제조업 x 10~29인	기타 제품 제조업 x 5~9인
제주	숙박업 x 5~29인	수상운송업 x 1~4인	기타 전문, 과학·기술 서비스업 x 5~9인

* (기준) ① 지역 : 시·도 기준 ② 업종 : 중분류 ③ 규모 : 고용보험DB 및 노사누리
④ 추출기준 : 체불인원(33.3%) / 전국 대비 지역집중도(33.3%) /
해당 업종 전체 사업장 중 체불 사업장 비율(33.3%)

3 사업장 감독 실시

□ **(실행 원칙)** 지방정부 감독 특성에 맞는 **사업장 감독 원칙 정립**

① **(선택·집중)** 임금체불 등 **권리구제 직결, 다수 위반항목** 중심 점검

② **(표준화)** 감독관 재량 최소화, 감독의 **표준화·시스템化**
(체크리스트·판단표, 임금·퇴직금·연차 등 계산 모듈 제공)

③ **(예방)** 적발·처벌보다 **예방 목적을 명확히** 하고, 영세 사업주의 **노무관리 지원 등 적극행정** 권장→**시정기회 우선 부여**, 이행 여부 확인 철저

□ **(방식)** 감독 시 **사전 교육, 2인 1조 원칙***(상호 검증 및 점검 지원) 등 감독 **절차 준수** 사항 엄수, **부서장은 준수 여부 최종 확인**

* 안전보건 감독 시 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등 전문가 최대한 지원·협조

< 사업장 감독 일반 절차 >

감독 준비	감독 실시	결과 조치	이행 확인	평가·환류
• 감독계획 통지 • 사전 준비	▶ • 감독(2인1조) • 점검 실시 • 증거 보전	▶ • 결과보고 • 시정지시	▶ • 확인 감독보고 • (미이행 시) 수사·과태료	▶ • 정보 공유 • 실적 분석 • 제도 개선

4 수사(시정지시 불이행시)

□ **수사 절차**

○ **확인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** 경우* **'범죄인지'** 보고와 함께 **절차 개시, 수사 및 송치**를 거쳐 **수사 완료**

* 법 위반시 ▲벌칙(벌금 또는 징역형 등)에 해당하는 경우 **수사 개시**
▲과태료인 경우 **부과 절차 개시**

〈 수사 일반 절차 및 업무 〉

범죄인지 (수사개시)	참고인 조사	증거 수집·보전	피의자 조사	의견서 작성	송치·종결
• 피의자 범죄·수사경력 조회	▶ • 조서 작성 • 피해 확인	▶ • 관련 서류 임의제출·압수 확보	▶ •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	▶ • 의견 결정 (기소·불기소)	▶ • 사건기록 편철·송치

□ 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 수사 지원 방안

○ **검사 수사지휘 삭제 및 지도·조언 신설**('26.10.2.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)
→ **지방감독관은 독립된 수사권**을 가지고 **수사 완결성 확보** 필요

* 지방감독관은 고소 등 신고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**수사 건수는 제한적**
↳ (참고) '25년 30인 미만 정기 노동감독 사업장 중 범죄인지(수사) 비율: **0.8%**

○ **파견감독관-노동부**(지방노동청)-**공소청**(검사)의 **3단계 지원 체계** 구축
→ 지방감독관 수사의 **전문성·공정성 확립**

① **(중앙감독관 파견)** **베테랑 중앙감독관·부서장 파견,** 지방정부 내 **"모든 수사"**에 대해 **"全 과정" 지휘·점검·자문**

* 제주 1명 파견(9.1.자) → 하반기, 지방정부에 파견 수요 파악

② **(노동청 지원)** 지방감독관이 수사상 쟁점사항에 대해 **적용·해석 지원을 요청**하는 경우, **지방노동청 즉시 지원**(전담자 지정)

- 관할 지방관서 **신속 질의회시 체계 구축** → 전담 부서·담당자가 질의 접수일부터 **5일 이내 신속 회시**(긴급 시 전화·이메일 우선 회신)

- 특히, **주요 수사**에 대한 **노동부장관**의 **법령 해석·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**(노동감독관법 제24조제2항)도 적극 활용

③ **(검사 지도·조언)** **형사법상 쟁점 사항**에 대해 형소법상 **검사의 지도·조언 활용**(「수사 매뉴얼」에 지도·조언 절차·방법 세부 명시)

* 「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」(대통령령) 제정 예정

- **수사 위법·미진 시** 검사 **보완수사·시정조치 요구,** 피해자 이의제기 등 **형사법상 외부통제 작동**(통제 공백 최소화)

○ 추가로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**고난이도 수사**의 경우,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**"이첩 신청 제도"** 마련(이첩 필요성·중대성 등 검토)

* (절차) 지방정부 이첩 신청(사유서·감독결과·증거목록 첨부) → 지방노동관서 필요성 검토·승인여부 결정 → (승인 시) 해당 사업장 위임 철회·사건 인계

5 위임사무 관리(사전-집행-사후)

□ **(단계별 조치) 노동감독관법**은 지방정부의 **감독 업무의 공정성·통일성·전문성을 담보**하기 위해 **단계별 통제 제도**를 규정

○ 사유 발생시 법령에 따라 해당 제도 발동하여 **감독 사무의 투명성·공정성 실현** 및 **ILO 제81호 협약**(근로감독) **위반 우려 해소**

□ **(부정·비위 신고)** 지방감독관 **부정·비위 신고** 접수('27년)
→ **감사원, 권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**하여 신고·제보 처리

〈 업무 단계별 조치 수단 및 사유 〉

단계	조치 수단	사 유	내 용	근 거
사전	**자체시행계획 보완·변경 요구**	- 시·도 자체시행계획 법령 위반 - 종합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	미이행 시 위임 철회 등	법 제28조⑧
	위임사무 수행 능력 점검	위임 전 인력·조직·예산 등 여건 점검	미비점 보완, 컨설팅 지원	법 제28조①
집행	**시정 및 개선 요구 (지도·감독)**	- 부실·과잉 감독 - 법령 적용 오류·위반 - 감독 절차 위반 등	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, 현지 확인·점검	법 제30조, 지방자치법 제185조
사후	**시정명령 및 취소·정지**	위임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	미이행 시 해당 명령·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가능	법 제30조, 지방자치법 제188조
	직무이행명령	위임사무 관리·집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또는 위임사무 수행 관련 노동부 사업 참여 및 보조금 중단·축소	법 제30조, 지방자치법 제189조
	감사	위임사무 적정 수행 여부 종합 확인이 필요한 경우	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에 따라 실시(결과에 따라 조치)	법 제30조, 지방자치법 제191조
	위임 권한 철회	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 미이행	사안 중대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철회	법 제28조⑤

Ⅲ. 하반기 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

❖ 법시행(12.8) 전 **조직·인력·교육 등 지방감독 시행 준비 완료**
→ 지방정부, 감독 착수 전 업무 수행 위한 **필수 준비사항 완비** 협조

□ **(조직·인력)** 노동부, **기준인건비 반영 행안부 일괄 요청**(~10월)

○ **(요청사항)** ① 감독 **조직·정원 조례 개정** 및 **부서 신설**
② 행안부 旣배정('26.7.7.)한 '26년 시도별 감독 **기준인력 배치**

□ **(교육)** 지방감독관 **맞춤형 교육과정(8주)** 개발, 운영(10~11월)

○ **(요청사항) 부서장·감독관 예정자** 최대한 **10월 교육** 참석

□ **(예산)** '26년 사무경비 **집행 모니터링**(~12월), **'27년 경비 편성**

○ **(요청사항)** 올해 예산 **지방비 매칭(30%) 확보 및 신속 집행**

□ **(전산)** '26년 **노동정보시스템(간이) 구축**(~11월), '27년 정식 시스템 개발

○ **(요청사항)** 노동정보시스템-온나라(지방정부) 연계작업 적극 협조

□ **(평가)** '27년 위임사무 **수행능력 사전점검** 및 미비점 보완(10~11월)

○ **(요청사항)** 감독 수행 **준비사항 완비** 및 **점검표 작성·제출**

□ **(합동점검·컨설팅)** **「'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」** 계획에 따라 지방노동관서-지방정부 **합동 감독*** **및 컨설팅** 실시

* 9개 권역별 협의회 구성('26.5) 및 합동감독 추진계획 수립(총 4,500개소) 完

○ **(요청사항) 현장 학습·멘토링**을 위한 **합동감독·컨설팅** 적극 참여

□ **(소통·협업)** 감독 협력을 위한 **업무협약**(MOU) **체결 지속 추진,** 기관장 기고문, 현장행보, SNS 등 **법시행 전후 집중 홍보**(~12월)

○ **(요청사항) 업무협약 체결 검토** 및 감독 준비·시행 시 **홍보 병행**

붙임 **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일정**

[1] 준비 — 지방 노동감독 기반 마련

1 법·규정·예산 등 기반 마련

①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 하위법령	~'26.下
② 조직·인력 구성 가이드라인	'26.3 完
③ 「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」 제정	~'26.10
④ '27년 지방감독관 교육·전산 구축 및 사무경비 예산 편성	~'26.下

2 지방노동감독관 배치 및 전문성 확보

① 인사처·지방정부와 '27년 채용계획 및 일정 협의	~'26.12
② 지방감독관 특화 감독·수사 교육과정 운영	'26.10~
③ 지방감독관 임면(사전협의, 사후보고)	'26.下~

3 업무 기반 시스템 마련

① 노동부 감독전산시스템 기반 간이시스템 구축	~'26.11
② 지방정부 전용 노동정보시스템 구축	~'27.7
③ 모바일 점검표 개발	~'27.7
④ 위임사무 수행능력 사전점검 기준(세부지침) 마련	~'26.9
⑤ 우수 지방정부 및 담당자 표창·포상금 수여	~'26.12

[2] 협력 — 중앙·지방이 함께 일하는 체계 구축

1 중앙-지방 협의체 운영

①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	‘26.9
②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·개최	‘26.5 完

2 중앙 – 지방 협력사업

①「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」 운영계획 시달	‘26.4~
② 지역별 지방노동관서-지방정부 합동 점검·컨설팅 추진	‘26.4~

3 중앙감독관 현장 지원

① 중앙노동감독관 파견	‘26.下~
② 지방노동청 현장 멘토링	‘26.下~

[3] 실행 — 지방 노동감독 실시

1 시·도별 자체시행계획 수립

① 감독 자체시행계획 수립	‘26.下~

2 위임 대상 사업장 선정

① 위임 대상 사업장 선정(지역·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)	‘26.11~

3 사업장 감독 실시

① 지방정부 사업장 감독 실시	‘26.下~

4 수사

① 지방노동관서-지방정부 수사 협조 체계 마련	‘26.下~

5 위임사무 관리(사전-집행-사후)

① 지방감독관 부정·비위 신고센터(핫라인) 설치	‘27